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59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김선민·김준형·조 국

이해민 · 신장식 · 김재원

장종태 · 서왕진 · 김원이

박상혁 · 김남희 · 강경숙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람의 사망은 연금 수급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현행법은 사람의 사망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동거 가족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.

이에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, 사망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 설).

법률 제 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9조의2(사망사실의 통보) 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이 있는 경우 사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"사망정보"라 한다)을 진단서 또는 검안서(전자 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기재하여야 한다.
 - 1. 사망자의 성명,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
 - 2.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
 - 3.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사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의료기관의 장은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사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·읍·면의 장(사망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장소를 관할하는 시·읍·면의 장을 말한다)에게

해당 사망정보를 포함한 사망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이경우 심사평가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.

- ④ 그 밖에 사망정보를 포함한 사망사실의 통보, 제2항에 따른 전산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 로 정한다.
- 제89조의3(사망신고의 확인·최고 및 직권 사망 기록) ① 제89조의2제 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·읍·면의 장은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 고기간 내에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 다.
 - ② 시·읍·면의 장은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89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할 것을 최고(催告)하여야 한다.
 - ③ 시·읍·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89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여야 한다.
 - 1.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사망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

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신고 확인, 사망신고 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- 제89조의4(자료제공의 요청) 시·읍·면의 장은 제89조의3에 따른 등록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사망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89조의2(사망사실의 통보) ①
	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
	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이 있
	는 경우 사망사실을 확인하기
	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(이
	하 "사망정보"라 한다)을 진단
	서 또는 검안서(전자적 형태로
	바꾼 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
	다)에 기재하여야 한다.
	<u>1. 사망자의 성명, 성별 및 주</u>
	민등록번호
	2.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
	3.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
	사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
	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	② 의료기관의 장은 사망일로
	부터 14일 이내에 사망정보를
	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	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
	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
	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
	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
	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사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사 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·읍·면의 장(사망자의 주소 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장소를 관할하는 시·읍· 면의 장을 말한다)에게 해당 사망정보를 포함한 사망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「전자정부 법」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 인 방법으로 사망사실을 통보 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사망정보를 포함한 사망사실의 통보,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89조의3(사망신고의 확인·최고 및 직권 사망 기록) ① 제89조 의2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·읍·면의 장은 제84조제1 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사망 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시·읍·면의 장은 제84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 도록 제89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 시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무자에게 7일 이내에 사망신고 를 할 것을 최고(催告)하여야 한다.

③ 시·읍·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9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여야 한다.

- 1.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 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2.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
 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
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
 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오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

<신 설>

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신고 확인, 사망신고 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제89조의4(자료제공의 요청) 시·읍·면의 장은 제89조의3에 따른 등록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청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예외로 한다.